

〈선거관리규정 개정안〉

* 선거관리규정의 일부 순서에 맞지 않은 조항 번호 조정과 1. ① 혼재 사용, 일괄 변경함.

현안	개정안	개정이유
제3조(적용범위) 다음과 같은 임원 선출시 적용한다. ① 법인 1. 이사장 1명	제3조(적용범위) ① 법인 1. <u>회장</u> 1명	- 이사장->회장으로 호칭 수정
제3조(위원의 위촉 및 임기)	제4조(위원의 위촉 및 임기)	-3조 조항이 2개 중복이라 조항 수정
제8조(피선거권) 이 법인의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. 단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. ① 제7조 1호 내지 2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회원	제9조(피선거권) 이 법인의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. 단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. ① 제8조 1호 내지 2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회원	-조항 수정에 따라 각 조항 변경
제13조(후보자의 등록) ① 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2주전 1주일 동안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. ② 후보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③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, 팩스(fax)에 의한 등록신청, 우편(전자우편 포함)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,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.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.	제11조(후보자의 등록) ④ <u>삭제</u> <u>[신설] ④ 입후보자의 책임성과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탁금을 설정할 수 있다.</u>	- 2018년 2월 감사선거시 입후보자가 없어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함 -조항 변경 <u>(기존규정에 10~12조 없음)</u> -임원 선거시 공탁금 징수

현안	개정안	개정이유
제14조 (후보자 추천) 각급 선거에 입후보자 하는 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한 개 지부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지부장 3인 이상의 추천을 받는 자로 한다.	제12조 (후보자 추천) 각급 선거에 입후보자 하는 자는 <u>3개 지부 이상의 정회원 30명의 추천을 받는 자로 한다.</u>	- 후보 추천자에 대한 기준 강화
제15조(후보자 등록, 후보자 사퇴의 공고)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후보자 등록무효 및 사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	제13조(후보자 등록, 후보자 사퇴의 공고)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후보자 등록무효 및 사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<u>하며, 후보자의 공탁금은 환불이 불가하다.</u>	- 공탁금 환불 불가 규정 마련
	[신설] 제6장 선거운동 제14조(선거운동의 정의 등) 이 규정에서 ‘선거운동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, 되게 하거나,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·의사의 표시 및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. 제15조(선거운동기간 및 선거운동 금지) ① 후보자가 확정 공고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이 규정이 정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 제16조(선거홍보물) ① 선관위는 기호, 성명, 사진, 공약 사항 등 후보자를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간 선거홍보물을 유권자에게 공	- 선거운동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

현안	개정안	개정이유
	<u>개하여야 하며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.</u> ② 후보자의 홍보는 선관위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선관위가 작성한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할 수 있으며, 토론회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여 공개하고 녹화분은 선거종료시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 제17조(선거운동의 금지 및 제한) <u>후보자와 등록된 선거운동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, 선거운동원은 후보자별 5명 이내로 현직 법원 임원을 제외한 회원으로 한다.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</u> ① 타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·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② 폭력·협박·납치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·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	

현안	개정안	개정이유
	제18조 (선거규정위반처리) ① <u>선관위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, 선거권자, 비회원 등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이 선거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한 명백한 증거를 인지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.</u> <u>1. 공개경고</u> <u>2. 윤리위원회회부</u> <u>3. 후보자등록무효</u> <u>4. 당선무효</u> ② <u>선관위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관계인에게 15일 이내에 정하여 소명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	-부정선거운동시 처리에 관한 조항 신설
제16조(선출방법) ① 회장의 선출방법은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과반수를 득한 자로 한다.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2차 투표에서는 종다수로 결정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② 이사는 각 지부에서 추천받은 자로 총회에서 인준한다. ③ 법인의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④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참석한 선거인단에게 찬반 투표를 실시하거나, 의사를 물어 당선자를 결정한다.	제19조 (선출방법) ①회장의 선출방법은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과반수를 득한 자로 한다.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<u>다득표 2인만 2차 투표를 실시하고 이 중 다수표를 얻은 자가 당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u> <u>② 삭제</u> <u>③→②</u> <u>④→③</u>	-법인 감사시 개정 요청받음 -조항변경 -이사선임과 관련하여 정관 명시사항이며, 선거규정 적용 범위에 이사는 해당되지 않음
제17조 (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제작)	제20조 (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제작)	-조항변경
제18조 (참관인) 후보자가 지명한 1인의 참관인에 한하여 참관석에서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. 다만, 방청인은 지정된 장소에서	제21조 (참관인) 후보자가 지명한 1인의 참관인에 한하여 참관석에서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하며, <u>회원 중에 정한다.</u>	-조항변경 -참관인 자격 규정

현안	개정안	개정이유
방정할 수 있다.		
제 19 조(투표결과의 공개)	<u>제19조→22조</u>	-조항변경
제 20 조(무효투표)	<u>제20조→23조</u>	
제 21 조(투표용지 등의 보관)	<u>제21조→24조</u>	
제 22 조(시행세칙)	<u>제22조→25조</u>	